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7
----------	-----

2014년 12월 17일  
운 영 위 원 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11. 28. 최판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4. 12. 2.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최판술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관심 있는 시정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구단체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적고, 일부 단체는 연구활동이 아닌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어

연구단체 운영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이에 내실 있는 정책개발 및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비의 지급 및 환수요건을 강화하는 등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우수 연구단체의 시상을 통한 건전한 정책연구개발 경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재 연구단체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연구단체의 가입요건을 “의원 10명 이상”, “3개 연구단체 이내”로 완화함 (안 제3조).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단체 심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 연구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지급’에서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원토록 강화함(안 제8조 제2항).
- 연구활동비 보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연구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1조).
- 연구단체 등록 취소기준을 강화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미 제출하거나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를 신설함(안

제12조).

-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일부 완화해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유도하고, 연구활동비 지급 및 환수요건 강화, 우수 연구단체 시상 근거 마련 등 현행 연구단체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임.

#### 2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 완화(안 제3조)

- 동 조례는 의원 연구단체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11월 14일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총 5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음<별첨1>.
-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요건(15인 이상, 2개 이내 가입)이 엄격하여 의원의 연구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구성요건을 일부 완화(10인 이상, 3개 이내 가입)하는 것은 ‘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의원의 다양한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 제정 당시 가입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연구

단체 중복가입과 남설을 방지하고 연구 활동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던 바,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5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한 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p>	<p>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 단, 같은 상임위원회 ----- 5명을 -----.</p> <p>② ----- 3개 -----.</p>

**3 연구단체의 예산 지원 및 연구활동비 집행 등(안 제7조 및 제8조)**

- 개정안은 의정운영공동경비의 5% 범위에서 각 연구단체별 지원 금액을 하향 조정(1천만원 → 6백만원)토록 하고 있음(안 제7조제1항). 이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연구단체별 배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 또한 연구활동 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시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7조제2항 신설), 특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토록 강제화하였음(안 제8조제4항). 이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연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한편 안 제8조 제1항에서 연구활동비 집행 방식을 “2회 이상 분할 지급 방식”에서 “사업별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은 연구단체가 당초 구성목적인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연구단체의 지원)</b>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동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p> <p><u>&lt;신 설&gt;</u></p>	<p><b>제7조(연구단체의 지원)</b>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동경비의 5% 범위에서 ----- 600만원 -----.</p> <p>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p>
<p><b>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b>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p> <p>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p> <p>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p> <p>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p> <p>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b>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b> ① -----,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p> <p>② -----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p> <p>③ ----- 그 밖에 -----.</p> <p>④ -----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 즉시 회수해야 한다.</p> <p>⑤ -----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

#### 4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우수단체 시상(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 개정안은 i)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ii)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iii)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취소되는 경우 연구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토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제1항)
- 이는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원된 예산이 활동목적에 부합하게 합목적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우수 연구단체 시상은 연구단체간 건전한 경쟁과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내실있는 연구단체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 align="right">&lt;신 설&gt;</p> <p>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p> <p>2. 연구활동 <u>결과보고서</u>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 align="right">&lt;신 설&gt;</p> <p align="right">&lt;신 설&gt;</p> <p align="right">&lt;신 설&gt;</p>	<p>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p> <p>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p> <p>2. (현행 제1호과 같음)</p> <p>3. ----- <u>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u>-----</p> <p>4. <u>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u></p> <p>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u>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즉각 중지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u></p> <p>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u></p>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라 함은”을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15인 이상 의원으로”를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단서 중 “동일상임위원회”를 “같은 상임위원회”로, “5인”을 “5명”으로 하고, 제2항 중 “2개”를 “3개”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로,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7.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 제1항 전단 중 “연구단체에”를 “등록된 연구단체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같은 항 단서 중 “1,000만원”을 “600만원”으로 각각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 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제1항 중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를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4항 중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 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같은 항 중 “회수할 수 있다”를 “즉시 회수해야 하다”로, 제5항 중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를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각각 한다.

제9조 중 “의장의 허가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당해 연도의”를 “해당 연도의”로,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 의위원회”를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즉각 중지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u>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u>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u>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u>란 ----- ----- ----- -----.</p>
<p>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u>15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u> 단, <u>동일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u>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u> ----. 단, <u>같은 상임위원회 ----- 5명을</u> -----.</p>

현행	개정안
<p>② 각 의원은 <u>2개</u>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한 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p>	<p>② ----- <u>3개</u> ----- ----- -----.</p>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1호서식의</u>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u>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u> ----- ----- -----.</p>
<p>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u>당해</u>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 <u>해당</u> ----- ----- ----- -----.</p>
<p>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u>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u></p>	<p>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u>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u></p> <p>② <u>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u></p>

현행	개정안
<p>(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p> <p>③ <u>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u></p> <p>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u></li> <li>2. <u>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u></li> <li>3. <u>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u></li> <li>4. <u>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u></li> <li>5. <u>기타 필요한 사항</u></li> </ol> <p>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u>연구단체에</u> 대하여 의정운영 공동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p>	<p><u>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u></p> <p>&lt;삭제&gt;</p> <p>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u></li> <li>2. <u>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u></li> <li>3. <u>연구주제의 조정</u></li> <li>4. <u>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u></li> <li>5. <u>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u></li> <li>6. <u>우수 연구단체의 선정</u></li> <li>7. <u>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u></li> </ol> <p>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u>등록된 연구단체에</u> 대하여 의정운영 공동경비의 5% 범위에서 -----</p>



현행	개정안
<p>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u>1,000만원</u> 이상 지원할 수 없다.</p> <p>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u>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u>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u></p> <p>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안에서 <u>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u></p> <p>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u>기타</u>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p>	<p>-----.</p> <p><u>600만원</u> -----.</p> <p>② <u>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u></p> <p>③ -----</p> <p>-----</p> <p><u>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p> <p>-----, <u>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u></p> <p>② ----- 범위에서 <u>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u></p> <p>③ -----</p> <p>-----</p> <p>--- <u>그 밖에</u> -----</p>

현행	개정안
<p>를 사용할 수 없다.</p> <p>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u>연구활동 결과보고서</u>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u>회수할 수 있다.</u></p> <p>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u>연구계획서의 충실도</u>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의장의 허가를</u> 받아야 한다.</p> <p>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u>사용내역서</u>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의장은</p>	<p>-----.</p> <p>④ ----- -- <u>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u> ----- ----- 즉시 회수해야 한다.</p> <p>⑤ ----- <u>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u>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 <p>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의장의 허가</u>를 ----- -.</p> <p>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 ----- <u>해당 연도의</u> ----- ----- -<u>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u>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p>

현행	개정안
<p>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u>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1. (생략)</p> <p>2. 연구활동 <u>결과보고서</u>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p> <p>----- <u>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u> -----</p> <p>-----.</p> <p>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p> <p>2. (현행 제1호과 같음)</p> <p>3. ----- <u>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u>-----</p> <p>---</p> <p>4. <u>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u></p> <p>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u>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즉각 중지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u></p> <p><u>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u></p>